

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09. 12. 17.(목)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한국방송공사(KBS) 감사 임명에 관한 건 (2009-61-270) (비공개)

2)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2009-61-268)

○ 지난 회의에 이어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09년 방송법 입법계획 ('09. 3. 24 : 위원회 보고)에 따라 마련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 주요 개정 내용

①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 모든 유료방송 요금은 승인제로 운영되었으나, 데이터방송, VOD 등 위원회가 고시하는 유료방송 부가서비스와 중계·음악유선방송의 요금규제를 신고제로 전환

② 직접 사용채널의 운영범위 규정

- 직접사용채널의 운영범위(장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접사용채널의 운영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와 위반시 과태료 조항을 신설

* 직접사용채널 : 플랫폼사업자(SO, 지상파DMB,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지역채널은 제외)하는 방송채널

③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서류 접수창구 일원화

- 최다액 출자자의 변경이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기업결합 신고 사항일 경우 방송사업자는 위원회와 공정위에 해당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공정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와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는 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함

④ 허가·재허가 등의 심사 기준 정비

- 현재 방송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허가·재허가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방송사업별 특성에 맞는 허가·재허가 등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재허가 등의 심사에 대한 세부심사사항, 절차,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

⑤ 방송사업 회계기준 마련

-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⑥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부과 범위 등 마련

- 신규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왔으나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대상을 신규 허가·승인을 취득한 방송사업자로 하고, 해당 출연금의 범위를 납입 자본금의 100분의 10의 범위로 규정
- 지상파방송사와 달리 종합편성PP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근거가 없어, 종합편성PP의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범위 내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⑦ RO의 채널 운용범위 조정 및 유효기간 삭제

- RO의 채널 운용범위에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KBS·EBS 위성방송을 삭제하고, 채널 운용범위의 유효기간(2010년 6월)을 삭제

⑧ 한국방송공사 운영계획 작성방식 개선

- KBS의 예산 편성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운영계획에 예산·인력·조직·시설운영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

⑨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미편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거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과태료 조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과태료 조항인 제108조제1항제4호의 “제69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제69조제3항 내지 제7항”으로 변경

⑩ 공익채널 미운영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공익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조항이 없어 효과적인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익채널 미운영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주)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 - (2009-61-271)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09. 12. 31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주)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이하 "서대구방송")에 대하여 재허가를 거부하기로 의결함

※ 단, 서대구방송 가입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하여 '10. 3. 31까지는 방송을 하도록 함

4) '09년 2분기 의무편성비율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 씨제이미디언(주) 등 3개사 - (2009-61-272~275)

-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직무대리)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69조제4항, 제7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제57조제4항에 따라 규정된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씨제이미디언(주) 등 3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의결함

○ 주요 내용

법인명(채널명)	위 반 내 용	과태료 부과액
씨제이미디언(주) (XTM)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4월, 5월 위반)	750만원 (월별 375만원)
춘천MBC(주) (춘천MBC DMB)	1개 국가 제작 영화 편성비율	500만원
한국정책방송원 (KTV)	1개 국가 제작 영화 편성비율	450만원
씨제이미디언(주) (채널CGV)	1개 국가 제작 영화 편성비율	500만원

5) 삼성에스디에스(주)의 삼성네트웍스(주) 합병인가에 관한 건 (2009-61-276)

-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삼성에스디에스(주)의 삼성네트웍스(주) 합병 신청을 인가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의 ①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②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③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④이용자 보호 ⑤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삼성에스디에스(주)의 삼성네트웍스(주) 합병은 공정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 합병법인 : 삼성에스디에스(주) >

주요 사업	주요 주주(5%이상)	경영 현황('08년)		
		매출액	자본금	당기순이익
- 시스템 분석·구축 - 정보시스템 운영	·삼성전자(21.3%) ·삼성물산(17.9%) ·삼성전기(8.29%) ·이재용(9.14%)	2조 5,194억원	1조 1,625억원	2,330억원

< 피합병법인 : 삼성 네트워크(주) >

주요 사업	주요 주주(5%이상)	경영 현황('08년)		
		매출액	자본금	당기순이익
- 회선설비임대사업 - 별정통신사업 (시내, 국제, 인터넷전화)	·삼성전자(23%) ·삼성물산(19.5%) ·삼성전기(8.99%) ·이재용(7.64%)	7,448억원	2,987억원	570억원

6)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건 (2009-61-277)

-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SK텔레콤 2G에만 부과하였던 상호접속 의무를 SK텔레콤 3G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 고시 개정안을 의결함
- 주요 개정 내용
 - 시내전화는 KT(점유율 90.2%)를, 2G와 3G를 포함한 이동전화는 SK텔레콤(점유율 55.5%)을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하는 한편, 초고속인터넷은 KT(점유율 47.6%)를 상호접속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현 행		개 정 안	
역무명	사업자명	역무명	사업자명
시내전화	KT	시내전화	KT
이동전화 (셀룰러, PCS)	SKT	이동전화 (셀룰러, PCS, IMT-2000)	SKT
인터넷접속역무	KT	인터넷접속역무	제외

○ 향후 상호접속 정책 방향

- 이동전화의 경우 2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10년~'11년 상호접속료를 산정할 예정
- 첫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10년부터 접속료 산정시 SKT의 중계·단국간 접속료 차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조정 및 시기는 시장경쟁상황, 그간 3G 단국교환기 미접속으로 인한 사업자간 접속수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기로 함
- 둘째, 중소기업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년 접속료 산정시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이를 위해 '10년초부터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임

7)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개정에 관한 건 (2009-61-278)

-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함
- 주요 개정 내용
 - 2008년도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및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KT의 시내전화(점유율 90.2%)와 SK텔레콤의 2G와 3G를 포함한 이동전화(점유율 55.5%)에 대하여 이용약관을 인가 받도록 함
 - KT의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시장점유율 하락 추세,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용약관 인가대상에서 제외(신고로 전환)하기로 함

사. 보고사항

1) 「케이블TV 채널 편성을 위한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거래 관계에 적용될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케이블TV 채널 편성을 위한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 내용

① 채널편성을 위한 PP 평가 기준

- 시청률 조사 결과, 자체제작 비용, HD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본방송 비율, 콘텐츠 다양성, 지역 적합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

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 프로그램 투자비, 채널 선호도, 시청 점유율, 케이블TV에 특화된 콘텐츠 제공 여부, HD 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배분
- 다만, 콘텐츠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 보장을 위해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정규모를 모든 PP에게 배분

③ 채널 제공 및 공급 관련 절차

- 매년 12월 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되, 협상 등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과 단기간 내 채널변경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 등을 고려해 2010년 계약과 이용약관 신고는 1/4분기 내 완료키로 함

④ 케이블TV 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사항

-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점검
- 결합상품에서 방송을 과도하게 할인해 프로그램 사용료가 축소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합상품 규제방안을 마련
- 74개 SO에 대한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된 방송수신료 수익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실적이 미진한 경우 시정명령 등으로 조치할 계획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기로 함

6. 폐 회 (17:40)

※ 11:50 정회, 16:00 속개